

물질 안전 보건 자료(MSDS)

1. 화학제품과 제조회사 정보

- 가. 제품명 : 레미프라이머
-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: 접착제
-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 업자 정보
- 주 소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7-9호(반월공단 1B-40L)
한일산업주식회사 안산공장
 - 전화번호 : 031 - 492 - 6707~10
 - 작성 부서 및 이름 : 부설연구소 , MSDS 담당자

2. 유해.위험성

- 가. 유해.위험성 분류
- 피부 과민성 : 구분2
 - 생식독성 : 구분2
 - 눈 손상성/자극성 : 구분2
 - 흡인유해성 : 구분2
-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구분	그림문자	신호어	유해, 위험문구
피부 과민성		경고	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생식독성		경고	오염된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십시오
눈 손상성/자극성		경고	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흡인유해성		경고	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구역, 구토, 위통을 일으킬 수 있음
예방	○ 취급 후에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. ○ 눈, 피부, 의복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. ○ 취급 및 사용시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하십시오.		
대응	○ 흡입 또는 섭취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오.		
저장	○ 밀봉하여 저장하십시오.		
폐기	○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(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).		

다. 기타 유해·위험성 : 자료없음.

3.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 관용명	이명(異名)	CAS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POLY STYRENE	스티렌	9003-53-6	영업비밀
2-ETHYLHEXYL ACRYLATE	2-에칠헥실에스테르	103-11-7	영업비밀
BUTYL ACRYLATE	부틸 에스테르	141-32-2	영업비밀
ACRYLIC ACID	아크롤릭산 공중합체	79-10-7	영업비밀
Texanol	텍사놀	25265-77-4	영업비밀
물	-	7732-18-5	영업비밀

4. 응급조치 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
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.
-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
- 오염된 의복, 장신구 및 신발을 즉시 제거할 것. 씻기 전에 피부에서 모든 화학물질을 닦아 낼 것. 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(최소 15-20분)다량의 물을 사용하여 비누 또는 중성 세제로 세척할 것.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.

다. 흡입했을 때 :

- 노출지역에서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고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.

라. 먹었을 때 :

-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섭취 시 토하게 하고 즉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.

마.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/영향 :

- 자료 없음

바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:

- 해독제 : 알려진 특정한 해독제는 없음
- 증상에 따라 기능적으로 치료할 것

5. 폭발·화재시 대처 방법

가. 적절한 소화제 :

- 분말소화제, 정규포말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(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) :

- 유독한 탄소 산화물 및 다양한 탄화수소 산화물을 포함할 수 있음.

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

-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 보관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:

- 옆질러진 제품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짐에 주의하고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연한 세제로 세척한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:

- 다른 포장 용기로 이송하고 누출 제품 세척수는 폐수정화 처리할 것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 :

- 번짐을 막기 위하여 보호 장벽을 쌓고 주변 공간을 통풍시킨다.

7. 취급 및 저장 방법

가. 안전 취급 요령 :

- 상온에서 보관할 것. 얼지 않게 할 것.

나. 안전한 보관 방법(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) :

- 용기는 밀폐 시켜두고 시원한 곳에 둘 것.

8.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: 자료 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: 특정 관리 방법 필요 없음.

다. 호흡기 보호 :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호구가 필요 없음. 비상시에는 호흡기를 이용하여 호흡시킬 것.

라. 눈 보호 : 근로자는 비말보호 또는 분진 보호용 고글형 보안경을 착용하여야 함.

마. 손 보호 :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 후에는 손을 씻을 것

바. 신체 보호 :

- 근로자는 반복 또는 장기적인 피부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의와 장비를 착용하고 보안장갑을 착용하여야 함.

사. 위생상 주의 사항 :

- 소방 및 기타 생명 또는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모든 자급식 전면 호흡용보호구로서 압력 요구나 기타 양압으로 작용되는 것.

아. 노출 기준 :

- 산업안전보건법 : 설정되지 않음

9. 물리화학적 특징

- 가. 외 관 : 유백색 점조액
- 나. 냄새 역치 : 자료없음.
- 다. p H : 7.5 ± 0.5
- 라. 점 도 : 100 ± 50
- 마. 녹는점/녹는점 범위 : 자료없음.
- 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자료없음.
- 사. 인화점 : 자료없음.
- 아. 증발 속도 : 자료없음.
- 자. 인화성(액체) : 자료없음.
-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
- 카. 증기압 : 해당없음.
- 타. 용해성 : 용해되기 쉬움
- 파. 증기밀도 : 해당없음.
- 하. 비 중 : 1.05 ± 0.05

10. 안전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: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
- 나. 피해야 할 조건 : 저장 시 녹에 의한 부식 및 동결에 주의할 것.
- 다. 피해야 할 물질 : 산화성 물질 기타 사용 시 안정성 테스트를 할 것.
- 라.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 물질 : 자료없음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 - 급성 경구 독성 : 자료 없음.
 - 급성 흡입 독성 : 자료 없음
 - 피부 접촉 : 자료 없음.
 - 눈 접촉 : 자료 없음.
- 나. 물리적, 화학적 및 독성학적 특성에 관련된 증상
- 다.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지연,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
 - 급성 독성 물질 : 자료 없음
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: 자료 없음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물질 : 자료 없음
- 호흡기 과민성 물질 : 해당없음
- 피부 과민성 물질 : 해당없음
- 발암성 물질 : 해당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: 해당없음
- 생식독성 물질 :
- 표적장기,전신독성 물질(1회 노출)
- 표적장기,전신독성 물질(반복 노출)
- 수생 환경유해성 물질 :

라. 독성의 수치적 척도(급성 독성 추정치 등)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- 가. 수생,육생 생태독성 : 자료 없음
- 나. 잔류성 및 분해성 : 자료 없음
- 다. 생물 농축성 : 자료 없음
- 라. 토양 이동성 : 자료 없음
- 마. 기타 유해 영향

13. 폐기시의 주의 사항

- 가. 폐기 방법 : 재연소기와 가스세정기가 부착된 화학소각로에서 소각할 것
- 나. 폐기시 유의 사항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)
 -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 폐기 물배 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 처리 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자,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,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
 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- 가. 유엔 번호
- 나. 유엔 적정 선적명
- 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
- 라. 용기 등급(해당하는 경우)
- 마. 해양 오염물질(해당/비해당)
- 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
15. 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나.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-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: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 안 됨
- 수질 환경보전법
 - 배출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(시행령 [별표1]의 사업장 규모별 해당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 없음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자료 없음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자료 없음

16. 기타 참고 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

나. 작성일자 : 2013, 07, 01

다. 최초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:

[이 자료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 10조(작성항목)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]